

**부속서 5D**

**관세 접촉선**

1. 관세접촉선은 다음과 같다.

가.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내부조직,

그리고

나.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관세국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내부조

직

2. 양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접촉선의 다음의 정보, 즉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협정 발효일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후의 시점까지 교환한다.